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7. 13 선고 2021가단525952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기창, 성승용

피 고 1. A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김수경, 신용훈, 심재국, 임성원, 정찬우, 명현준

변 론 종 결 2022. 6. 8.

판 결 선 고 2022. 7. 13.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68,954,435원 및 그 중 68,781,432원에 대하여 2021. 9. 14.부터 2021. 11. 28.까지는 연8%,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2021. 3. 10.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1. 3. 23. 접수 제5024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원고는, 피고 C이 운영하던 소외 D의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피고 A이 소외 E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소외 은행은 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6. 1. 4. 피고 A과 사이에 체결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기한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기운)종합통장대출 과목으로 대출금99,000,000원을 변제기한 2016. 12. 2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그 후 변제기한을 2021. 12. 24.로 변경하였는데, 피고 A은 2021. 5. 31. 폐업으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소외 은행이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여 원고는 2021. 9. 14. 대출원금 68,000,000원과 이자 781,43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은 원고가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행, 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173,003원을 지출하였고, 또 원고와 A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행일 이후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율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현재 원고가 정한 이율은 위 이행일인 2021. 9. 14.부터 연8%라고 주장하면서 주문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A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그 내용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 A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보증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인 2021. 3. 23. 피고 C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 2021. 3. 1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바, 이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대위변제가 2021. 9. 14.에 이루어졌으나, 보증사고는 같은 해 5. 31.에 발생하였고,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는 같은 해 3. 10.에 이루어졌는바, 보증사고로 인한 사전구상금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각 과세기관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공동담보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F조합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3,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80,000,000원의 합계 115,000,000원을 피고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는 115,000,000원 정도였으므로 공동담보에 증감이 없고, 피고 A은 당시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호증(G)의 기재를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시세는 하한가가 130,000,000원 정도이고, 일반가가 147,000,000원이고, 또 피고 B은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 A의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를 인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A이 당시 채무변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피고 B은 당시 피고 A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경영난에 봉착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거나 폐업 및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해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최종 부실처리되리라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었고,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의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1억1,500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들의 부모님들이 생전에 살던 집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근저당채무와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므로 피고 B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부모님이 생전에 살던 집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과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채무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유는 피고 A의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를 한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고, 피고 B이 선의라고 볼 사유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가 추정되는 것이 반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진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인규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 서울특별시 관악구 H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I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J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45.78㎡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관악구 H 대 238㎡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1. 238분의 24.91

